

돼지콜레라 백신중단과 그 후의 대처방안



한 백 용

(본회 부회장/2000GGP 대표)

1. 돼지콜레라 방역 70년

지금으로부터 70년전, 1930년 일제 조선총독부는 조선 가축전염병 예방령을 제정·공포하며 돼지콜레라를 이에 포함시켜 첫 방역 활동을 전개시켰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61년 우리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역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8년전인 1982년 가축방역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1종 가축전염병과 2종 가축전염병을 구분하여 대폭 법령을 개정한 바, 돼지콜레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한 후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방역사업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콜레라의 방역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50년이 넘도록 돼지콜레라 방역에 그 많은 예산과 인력(공수의)을 투입하고도 거의 매년 돼지콜레라가 발생되는 실패만을 거듭하였다.

물론 이것은 농가 부업규모가 대부분을 차지

하는 양돈업의 영세한 생산 구조상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농가의 수준에도 기인하였지만, 매년 실패를 거듭하고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수립하여 방역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전형적인 관료적 행정의 산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2. 2000년 10월 1일 백신중단

2000년! 새 천 년의 기점에 양돈업계는 우리나라 양돈사(養豚史)에 길이 남을 돼지콜레라 백신중단의 새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200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50년이 넘도록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그 지긋지긋한 돼지콜레라 백신을 중단해야 한다.

양돈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10년이 넘도록 수천 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며 준비해 온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우리 나라는 돼지콜레라가 30년 이상 매년 빠짐없이 발생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 그 다음 해에 돼지콜레라 백신을 중단시

양돈산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출품목으로 지정되어

1조5천억원 이상을 시설자금으로 집중지원한 장치산업으로서 생산기반이 크게 확충되었다.

이와 같이 수출산업으로의 생산기반을 다져가는 중에 수입국인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계획에 의하여

일본과 같은 시점인 10월 이후 백신을 중단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에서 정부당국은 자신없는

청정화 계획과 아울러 백신중단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국내외에 발표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백신중단의 무방비 상태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시의 신뢰성 있는 대책이 정부당국의 확고한 의지로 발표되어,

이를 믿고 양돈농가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중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킬 계획이다.

최근 유럽 양돈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1993년 이후 단 한 건의 발생도 없었던 돼지콜레라 청정국인데도 불구하고 429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감염이 우려되는 발병 인접 농장을 포함하여 1,286개 농장의 돼지 1,100만 두를 도축하여 2조 7천억원(23억US\$)의 경제적 피해를 본 바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없는 가운데 추진중인 정부 당국의 이 백신중단 계획에 대하여 정부 당국이나 양돈농가 누구도 확실한 성공의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패의 경우 책임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양돈농가의 운명을 건 중대한 문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박멸사업 추진체제의 혼란

현재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추진과정에는 일부 관계공무원과 관련단체 지도자, 일선방역요원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은 연관 산업체 등 여러 분야의 성의있는 후원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체계의 일원화를 이루지 못하여 산만하고 효율성과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출범시 방역사업

의 집중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 본부장제를 채택하고 관련단체들의 참여하에 박멸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상황을 보면, 축협중앙회는 자체 예산 14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24,0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100두 미만 사육의 영세농가 14,228호는 정부 당국의 책임하에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멸비상대책본부는 총 27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9월까지 만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책임성 있는 구심적 역할의 사업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박멸사업은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서 통합·조정되어 일사분란한 집중적인 방역추진 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돈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는 방역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고 구체적인 박멸사업 추진은 민간 주도로 그 성과를 거둔 사례를 교훈삼아 방역사업의 추진방향을 민간단체 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화급한 실정이다.

4. 백신중단 이후 대책은 무엇인가?

양돈산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출품목으로 지정되어 1조5천억원 이상을 시설자금으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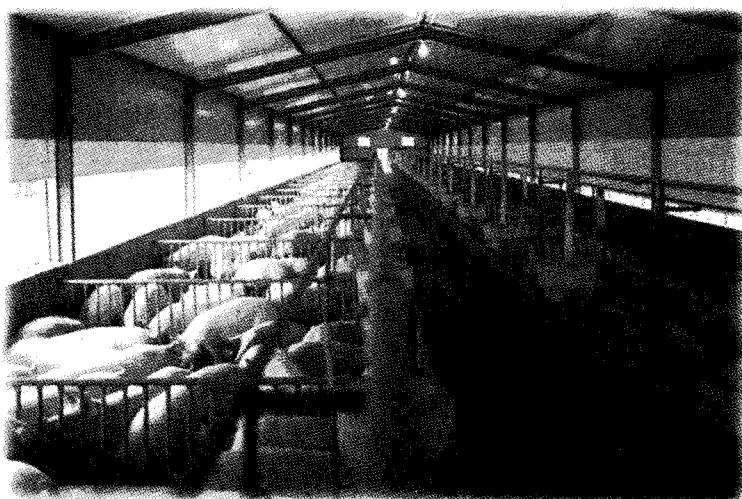
지원한 장치산업으로서 생산기반이 크게 확충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이한 시점에 단 1억달러의 외화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도자들이 굴욕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한 시점에 돼지고기 단일품목으로 3억2천만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의 외화수급에 기여하였고 '99년에도 3억3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산업으로의 생산기반을 다져가는 중에 수입국인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계획에 의하여 일본과 같은 시점인 10월 이후 백신을 중단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에서 정부당국은 자신없는 청정화 계획과 아울러 백신중단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국내외에 발표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백신중단의 무방비 상태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시의 신뢰성 있는 대책이 정부당국의 확고한 의지로 발표되어, 이를 믿고 양돈농가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중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양돈농가의 입장

양돈농가나 정부당국은 혼연일체가 되어 돼지



콜레라 박멸에 최선을 다하여 2001년에는 기필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으로 인정받아 양돈 선진국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돈업의 전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5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사육두수가 전체 사육두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돼지의 80%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양돈농가들은 모돈 1두당 5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었으며, 이 자금의 상당부분이 정책자금, 농축협 융자금 등 부채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백신 중단의 무방비 상태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시 과산의 지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시에 의한 백신중단의 경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수립되어 보장이 되어야만 2000년 10월1일을 기점으로 백신중단을 통한 돼지콜레라 청정화의 길목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가. 발병농장에 대한 신속한 처리 대책

'99년 용인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시 살처분 매몰지연 사연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국의 사전 준비 부족이다. 매몰장소의 확보와 관련 법규의 상반된 규제 등의 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가운데 발생된 심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의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가 중심으로 매장 장소를 구하여 살처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발병 신고 후, 완전 처리까지도 생산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실정을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금후 발생시 전두수를 매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확보와 관련법규의 보완 등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 이에 대한 시나리오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발생농장의 지원대책

백신을 하고 있는 기간중의 발병은 농가의 백신 미접종이나 백신접종의 미숙 등 농가의 잘못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기에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계획에 의하여 백신을 중단한 이후 무방비 상태에서의 발생은 농가의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병농장은 일시에 전두수를 살처분함으로써 모든 생산활동의 중단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입의 완전중단으로 가계의 유지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모든 지원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 등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이 확정되어야 한다.

1) 발생농장의 전 두수 살처분과 동시에 발생농장의 모든 부채는 3년간 상환 유예하고 유예기간중의 이자는 감면해야 한다.

2) 발생농장은 적어도 6개월 이상 비운후 철저한 소독과 검사를 거쳐야 하고 방역요원의 입식 허가를 득한 후, 매월 일정두수의 후보모돈부터 입식하여야 하므로 사업 재기자금으로 살처분 모돈 1두당 100만원의 장기 저리자금의 지원을 해야 한다.

3) 발생농장은 6개월의 돈사 휴식기간 경과후 매월 순차적 후보모돈을 입식할 경우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2년간의 수입금 손실보상이 지원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발생 인근농장의 이동제한에 대한 피해는 실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계속되는 모돈의 분만과 육성돈의 성장은 돈사의 부족사태를 유발시킬 뿐아니라, 출하직전의 비육돈은 출하시기 상실로 체중 초과 등 상품성이 떨어져 결국은 헐값으로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명백한 바,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발병농장의 인근농장들은 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전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그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발병농장의 돈군 전체를 살처분 매장할 경우 보상금은 양돈농가들이 납득할만한 시기 기준으로 사전 고시되어야 하며 웅돈, 임신돈, 분만중인 모돈, 후보중돈, 포유중인 자돈, 이유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 구체적으로 보상금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기술된 대책들은 이미 양돈 선진국에서 시행되었거나 우리와 같은 시기에 백신을 중단할 계획인 일본의 양돈농가들이 정부당국에 요구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대책들이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당국과 업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백신중단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대책들은 부채의 과다와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하여 64조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산업지원 정책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지원규모에 불과하겠지만, 양돈농가에게는 생존을 가름할 중요한 대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또한 식량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육류 소비량 2분지 1이상을 차지하는 떡거리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양돈**